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2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3.

다. 회 부 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 별표 1 <신설>	○ 별표 1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회계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세 입	◦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필요 시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가능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의 충당을 위한 예비비 계상 가능
세 출	◦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관 리	◦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이라 함)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할만큼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더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의 건설, 수출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및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하였을 때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반도체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 투자가 중요하므로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경우 충분한 세입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신설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되, 필요 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발전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현행법 제14조2)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②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³⁾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

-
-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3)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유지 및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등 산업인프라의 공급,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은 인정됨.

다만, 기타 회계·기금에서 반도체산업 지원 관련 사업을 운영 중임을 참고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경우 사업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회계·기금 간의 체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사례4>

(단위: 억원)

회계 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산학협력고도화지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18개교 지원	1,085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혁신융자	중소·중견 신규 융자	900
일반회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지원)	6개교 지원	90
일반회계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예비취업자, 재직자 대상 산업계 주도 반도체 교육	43

4) 반도체산업 예산 규모 : (2022년) 0.65조원, (2023년) 1.08조원, (2024년) 1.27조원

회계 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일반회계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구미국가산단 연결교량 건설 지원	200
일반회계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인프라 및 센터 구축	50
일반회계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설계·제조)(R&D)	신규 12, 계속 47개 과제	629
일반회계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환경조성	설계지원센터 공간, EDA Tool, 시제품제작 지원	96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⁵⁾되었으며, 2024년 12월에는 동 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명칭이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되었으므로⁶⁾ 동 특별회계⁷⁾와의 중복 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명 변경

6) 법률 제20624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1. 공포 및 시행)

7)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1조 5,391억원을 조성하였는데,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6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2%, 중소벤처기업부 10.7% 등이며, 분야별로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8조 5,733억원, 74.3%), 기반구축(2조 437억원 17.7%), 자금지원 및 생태계구축(9,221억원 8.0%)을 각각 지원하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영 현황(부처별)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20,744	25,541	23,963	23,462	21,681	115,391
산업부	12,842	15,615	15,966	16,957	17,390	78,770
과기부	3,316	4,173	4,459	4,322	3,560	19,830
중기부	2,586	3,353	3,538	2,183	731	12,391
금융위	2,000	2,400	-	-	-	4,400

자료: 기획재정부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영 현황(분야별)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20,744	25,541	23,963	23,462	21,681	115,391
기술개발	13,308	17,349	18,435	18,657	17,984	85,733
기반구축	4,021	4,328	4,058	4,443	3,587	20,437
자금지원	3,400	3,800	1,400	300	40	8,940
생태계구축	15	64	70	62	70	281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특정 세입·세출 연계 등으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과 관련하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세출용도를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에 규정된 동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⁸⁾만으로는 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11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신 설></u>	별표 1 2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문의처
02)6788-5152

